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2221 호
- 다. 제출일자 : 2021. 2. 5
- 라. 회부일자 : 2021. 2. 9

2.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함(안 제2조).

다. 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인건비계정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며,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름(안 제4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입

- 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마.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고, 세입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세입으로 하되,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며, 그 밖에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함(안 제5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

- ①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계정 세입을 제외한 금액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지역자원시설세의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④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⑤ 법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⑥ 법령 및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으로 함

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협 의 : 원안 참조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0. 11. 19.~12. 9.)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19.12.10.)」 및 동법 시행령(2020.9.22.)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이하, “현행조례”라 한다)로는 상위법령과의 조문체계 및 계정구분사항 등이 맞지 않는 한계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임.

[표] 조례안 주요골자

조 문 별	주요 골자
안 제1조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토록 함.
안 제3조	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규정함.
안 제4조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각종수수료 세입)에 따르도록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
안 제5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르도록 하고, 세출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와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로 규정함.
안 제6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함.
부 칙 안	현행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현행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보도록 함.

■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현황 및 재정규모

- 그 동안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1)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15.10.8. 시행)를 제정하고 2016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으나,
- 지난 2019.12.10.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소방회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설치를 새롭게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상황임.
- 신설된 소방회계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전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정책사업비에 사용할 일반회계 전입의 최소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하고 이상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²⁾.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생략)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2)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당시, 신설된 「소방회계법」의 취지에 맞춰 총 8,767억 7백만 원 규모의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편성한 바 있으며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2021년 예산편성 기준)

○ **세입 : 876,7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보전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303,414 (34.6%)	27,305 (3.1%)	537,731 (61.3%)	3,534 (0.4%)	2,022 (0.2%)	2,701 (0.3%)

○ **세출 : 876,7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인건비	정책사업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654,862 (74.7%)	191,013 (21.8%)	26,775 (3.1%)	642 (0.1%)	3,415 (0.4%)

- 당시 세출항목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명목상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분류한 후 정책사업비 계정에 지역자원 시설세(303,414백만 원)의 70%이상(242,168백만원)을 배정하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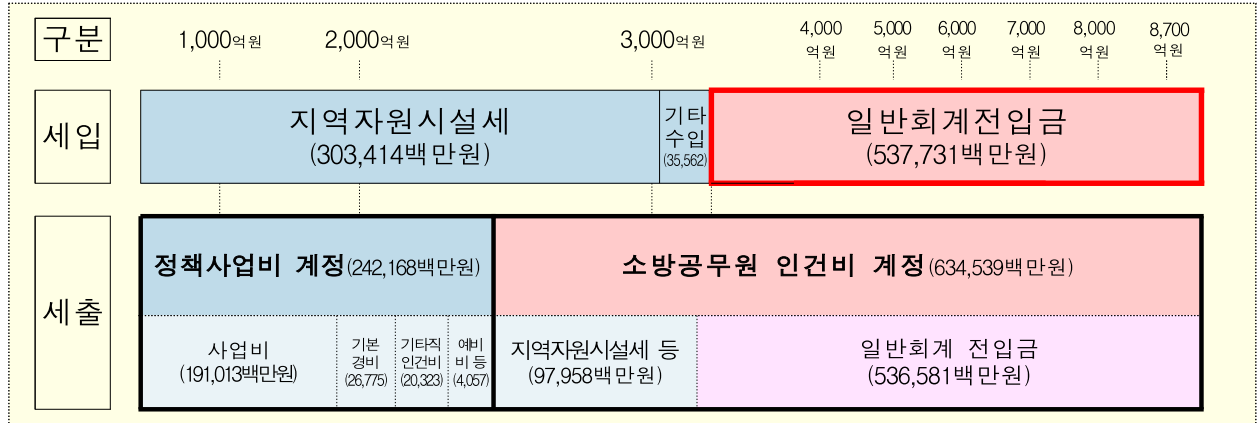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였고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취지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현행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분포도

- 참고로, 서울시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6년부터 '21년까지 최종 세입액은 연평균 2,783억 64백만 원(5.8%)이 증가하였음. ([표]참조)

[표] 서울특별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세입현황(2016~2020년) (단위 : 백만원)

구분	평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최종 세입액	278,364	251,675	258,631	275,625	297,549	308,339
증감율	5.8%	7.9%	2.8%	6.6%	8.0%	3.6%

-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연평균 307억 원 정도가 서울시에게 교부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부액 중 75%는 소방분야에 배정되고 25%는 소방이외의 재난 등 안전분야에 배정되고 있음. ([표] 참조)

[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현황(2016~2021)

(단위 : 백만원)

연도	평균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증감율)	471,949 (20.8%)	414,700	458,815 (10.6%)	417,260 (△9.1%)	383,834 (△8.0%)	685,134 (78.5%)	903,865 (31.9%)
서울	30,753 (7.1%)	29,249	33,133 (13.3%)	38,957 (17.6%)	27,055 (△30.6%)	25,370 (△6.2%)	35,899 (41.5%)
소방인건비 교부액	※ 소방인건비 교부액은 전국 소방공무원 부족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 신규 채용분만 교부된 금액					3,199	8,191 (156.1%)
소방(75%) 교부액	23,165 (2.5%)	21,964	24,850 (13.1%)	32,093 (29.1%)	20,291 (△36.8%)	16,628 (△18.1%)	20,780 (25.0%)
안전(25%) 교부액	6,948 (0.4%)	7,285	8,283 (13.7%)	6,864 (△17.1%)	6,764 (△1.5%)	5,543 (△18.1%)	6,927 (25.0%)

■ 현행 조례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비교

-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2016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 세입원만 명시할 뿐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세출 역시 소방사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등 사용가능 용도만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현행 조례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소방분야의 불안정한 예산투자로 인해 장비 등의 보유율, 노후율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6조에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 소방정책사업의 안정적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임.

[표] 현행 조례(소방안전특별회계)와 제정 조례안(소방특별회계)에 대한 비교

구 분	현행 조례	제정 조례안															
상위법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15.10.8.字 시행)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1.1.1.字 시행)															
위임사항	X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범위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계정구분	X	인건비 계정,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분리															
세입 세출	○ 세 입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안전교부세 - 일반회계전입금 - 기타 과태료 등 ○ 세 출 - 소방사무,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계 정</th> <th>세 입</th> <th>세 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인건비</td> <td>지역자원시설세 (정책사업비 제외한 금액)</td> <td rowspan="4">소방공무원 인건비</td> </tr> <tr> <td>소방안전교부세 (20/100초과금액)</td> </tr> <tr> <td>일반회계전입금</td> </tr> <tr> <td>보전수입(잉여금)</td> </tr> <tr> <td rowspan="4">소방 정책 사업비</td> <td>지역자원시설세 70%이상</td> <td rowspan="4">인건비 세출과목을 제외한 모든 세출</td> </tr> <tr> <td>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제외한 금액)</td> </tr> <tr> <td>일반회계전입금</td> </tr> <tr> <td>기타 과태료 등</td> </tr> </tbody> </table>	계 정	세 입	세 출	인건비	지역자원시설세 (정책사업비 제외한 금액)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 (20/100초과금액)	일반회계전입금	보전수입(잉여금)	소방 정책 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70%이상	인건비 세출과목을 제외한 모든 세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제외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
		계 정	세 입	세 출													
인건비	지역자원시설세 (정책사업비 제외한 금액)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 (20/100초과금액)																
	일반회계전입금																
	보전수입(잉여금)																
소방 정책 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70%이상	인건비 세출과목을 제외한 모든 세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제외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																
투자계획 수립	○ 수립주체: 기획조정실장 ○ 수립분야 - 소방시설의 노후율과 부족률개선 -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 소방공무원 등 소방인력의 복리 증진 및 처우개선 ○ 협의회구성 : 위원10명 ※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명문화 - 매년 안정적인 정책사업비 확보	X ※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간에 계정을 분리하여 계정별 세입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책사업비 확보의 안정성이 담보되어, 현행 정책사업비 5개년 투자계획수립 규정의 존치실익이 상실됨.															

○ 그러나 본 조례안의 경우는 「소방회계법」에 근거하여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금액과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100분의 20이상³⁾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서울시 부족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분으로 교부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자원시설세의 70%이상,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한 금액),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과태료 등으로 충당토록 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시켜 보다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의 ‘5개년 투자계획수립’을 별도로 강제화하지 않더라도 소방회계법과 본 조례안에서 인건비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의 재원투자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됨.

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주요골자별 의견

가.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나.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련 (안 제2조)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그 담당은 소방재난본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 계정의 구분 (안 제3조)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안 제3조는,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와 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내에서 각기 계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투입되는 불합리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음.

라. 인건비계정의 구성 관련 (안 제4조)

제4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안 제4조는,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세입은 법 제5조제1항을 따르도록 하면서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만 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입이란 ①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② 일반회계 전입금, ③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

정의 세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입

- 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
-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이처럼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가능한 세입예산의 근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건비와 정책사업비 간에 세입원의 혼용을 차단함은 물론 인건비 부족분은 결국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 된다고 할 것임.

마.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구성 관련 (안 제5조)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 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과 소방사무 외의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출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와 소방사무 외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및 인건비로 정하고 있음.

- 여기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이란, ①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계정 세입을 제외한 금액, ②일반회계 전입금, ③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⁴⁾, ④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⑤법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⑥법령 및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계정 세입을 제외한 금액 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지역자원시설세의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④ 소방 관련 국고보조금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⑤ 법령 및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⑥ 법령 및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으로 함

-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7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본 조례안은 법정 하한치인 100분의 70 이상을 그대로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 이를 좀 더 확대할 경우 정책사업비 재정규모에 보다 여유가 생길 것으로 여겨지나 다른 한편으론 인건비를 충당하는 일반회계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법정하한치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다소 아쉬움은 있다고 사료되지만 법에서 100분의 70이상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세출과 관련해 제5조제2항제1호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란, ①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③소방특별회계의 목적과 부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2호에 소방사무 외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는 인건비계정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만을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소방재난본부 조직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경비와 인건비의 경우는 정책사업비 세출계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여겨짐.

바. 경과조치 등(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 본 조례안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 부칙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종전에 이루어진 관련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종합의견

- 과거 소방관련 예산편성의 경우 정책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졌어야 하나 인력소요가 많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치중하다 보니 정책사업비 편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그러던 중 2015.10.8.일 공포·시행된 현행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함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책사업에 대한 5개년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그

이전에 비해 정책사업비 재정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시 등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역 간 소방재정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앙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더불어 「소방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균형성을 도모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임.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재정이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명확히 분리되면서 그 동안 인건비에 후순위로 밀렸던 정책사업비가 제 위상을 찾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소방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대시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